

일본에서의 다문화사회 지원을 위한 조례 연구

정 상 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 I. 서 설
- II. 조례 제정의 배경
 - 1. 다문화사회 현황
 - 2. 다문화정책 추진 현황
 -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4. 조례의 제정
- III. 조례의 주요 내용
 - 1. 목 적
 - 2. 정 의
 - 3. 기본이념
 - 4. 현 · 사업자 · 민의 책무
 - 5. 다문화공생사회추진계획
 - 6. 현과 시정촌의 협동
 - 7.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 8. 다문화공생추진심의회

- 9. 재정상의 조치 등
- 10. 부 칙
- IV. 평가 및 시사점

I. 서 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에 이은 다문화사회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국가 건설 당시부터 다민족, 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들도 있지만(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단일민족국가로 출발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도래가 낮은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법체계가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과거 동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과 외국인의 상호 소통과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법체계가었던 국적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사회 현실에 맞춘 이민법의 제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사회를 위한 주요 행정 업무는 사실 국가보다 각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외에도 지방 정부의 법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례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우리나라의 재일동포가 외국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남미 등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공생사회(多文化共生社會)'라는 개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행정서비스의 제공, 다언어로의 정보 제공 및 상담 창구,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도입 노력, 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의료기관에서의 다언어 자료 보급 지원, 질병예방 등의 홍보, 의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의료 통역, 국가에 대해 의료보험제도 개선 건의, 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정비, 외국인 고령자와 심신장애자에 대한 수당 지급 노력, 주거지원 제도 홍보,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차별 해소 노력, 방재를 위한 정보제공 및 다언어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른바 다문화공생사회 기본법이 아

직 법으로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발한 외국인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조례 제정의 배경

1. 다문화사회 현황

일본은 2006년말 현재 외국인등록인구가 약 208만명(미등록자를 포함하면 약 230만명)에 이른다. 이것은 일본 전체 인구의 약 1.7%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구에 비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서구 사회에 비하면 전통적이고 동질적이며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동양적 특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에 있어서도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 역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다.

과거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의 외국인인 한국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 차별, 동화의 강제, 모국어·모국문화의 박탈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있었다. 그 결과 재일 한국인의 경우 약 60~70%가 한국어를 모르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때에는 다문화공생사회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으며, 다만 재일 한국인의 정주화와 차별 철폐 운동이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하여 다문화 및 다양한 아이덴티티의 존중, 반(反)동화를 신조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왔다고 본

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국가 수준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에 있어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일본어를 교육해 주는 수백 개의 그룹이 자발적으로 나타났고 공립학교에 국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배치되었다. 의료통역 시스템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겨났다. 특히 1980년대는 ‘지역의 국제화’라고 불리는 new comers의 증가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때까지도 다문화이기 보다 세계화 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부터 new comers의 정주화와 외국인 시책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유럽의 영향으로 재일한국인이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외국인이 단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사키(川崎)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독자적으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설립하는 경우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발전 경로에 따라 외국

인 정책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다. 예컨대, 재일 코리안 중심인 ‘인권형’(예: 오사카 大阪市), new comers 시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시책인 ‘국제형’(예: 하마마츠 浜松市), 양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시책인 ‘통합형’(예: 가와사키 川崎市)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¹⁾

2. 다문화정책 추진 현황

일본의 중앙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주요 법률로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 있다. 입관법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요건, 외국인의 상륙 절차, 상륙 거부 사유, 일본인의 귀국, 외국인의 재류 자격의 취득 및 변경, 재류 기간의 갱신, 영주 허가, 재입국 허가, 자격의 활동의 허가, 취업 자격증명서, 여권의 휴대, 재류 자격의 취소, 외국인의 출국, 일본인의 출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2006년 5월 17일에 가결된 개정법에서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출입국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통합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1) 이 글의 제II절의 논의는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한승미,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 가와사키 시 및 가나가와 현의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인류문화인류학, 인류문화인류학회, 2003;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야마가타(山形) 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시대의 논리)민족연구』 통권 제31호, 2007. 9; 이태주·권숙인·Julia Martinez·Yamamoto Kaori,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문화인류학회·울릉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다문화 사회의 도전: 한국과 일본의 대화』, 일본연구소 워크숍 자료집, 2008. 3. 28.

종합적으로 연구·보고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05년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는데, 동 연구회는 2006년 3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에 관하여”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3월에도 후속 보고서를 제안한 바 있다.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가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공생을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에서는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봄으로써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문화(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있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

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동일한 ‘통합’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소극적 이해로 일관하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일본의 경우 외국인 시책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공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주요정책을 제안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공생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을 국제교류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문화나 사회구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도도부현	시구정촌	국제교류협회
기본 역할	시구정촌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인 과제 실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	지방자치체와 NPO 등과의 중개를 실시
구체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계획의 책정 -도·현 전체의 사회자원(인재, NPO, 교재 등)조사 -광역 통역자 파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대학 등과 제휴를 통해 인재의 개발 -시구정촌 정보의 공유화 구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계획의 책정 -외국인 주민에게의 상담업무 -지역 주민의 교류 기회의 제공 -학교와 NPO 등의 제휴 촉진 -지역의 관계 단체의 네트워크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체와 NPO 등과의 제휴 모델 만들기 -다언어 정보의 수집과 유통의 구조 작성 -일본어 교실이나 모국어 교실 등의 개최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발신 -통역자·번역 인재의 발굴

조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거나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교류 협회는 이주민들에 대해 일본어 교육, 지역 내 정보 전달, 교육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전용창구 개설 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4. 조례의 제정

이러한 현황을 배경으로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조례(川崎市外国人市民代表者会議条例)」(平成8年10月3日 条例第25号)를 제정하였고,²⁾ 최근 미야기현(宮城縣)에서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多文化共生社會の形成の推進にする條例)」를 제정하였다.³⁾ 특히 미야기현의 조례는 국적,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다문화 공생 사회 형성의 추진에 대한 기본 이념과 현의 시책을 규정하고, 사업자와 현민도 다문화 공생 사회 형성의 추진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적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 조례는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추진에 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아울러 현, 사업자 및 현민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 국적,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현민의 인권의 존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풍부하고 활력있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이 조례에서는 ‘다문화공생사회’의 개념을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아울러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에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 개념은 다문화공생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지적하는 것이며 다문화공생사회에서의 문화 내용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에 따른 평가나 차별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http://www.city.kawasaki.jp/16/16housei/home/reiki/reiki_honbun/ac40001741.html

3) <http://www.pref.miyagi.jp/kokusai/kokusei/tabunka-jorei.html>

3. 기본이념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은 다음 세 가지에 유의하고 있다(제3조).

첫째,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적, 민족 등의 차이가 없이 개인의 존엄이 확보되고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사회의 형성의 추진은, 현(縣), 시정촌(市町村), 사업자(事業者), 현민(縣民) 등의 적절한 역할의 분담 아래 협동하여 행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셋째,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은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에서 행해져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비록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이지만, 단순한 사회의 통합이 아니라 인권의 존중,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외국인을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현·사업자·민의 책무

이 조례에서는 현,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우선 현의 책무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제4조).

사업자의 책무는 그 사업 활동에 관해 기본이

념에 따라,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현 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제5조).

현민은 다문화공생사회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 직역, 학교, 가정 기타 회사의 모든 분야에 있어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6조).

이 가운데 사업자와 현민의 책무는 법적 의무로 보기는 어렵고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에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5. 다문화공생사회추진계획

다문화공생사회는 외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계 되는 것으로 특정한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제7조).

지사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문화공생사회추진계획(이하 '계획' 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우선 지사는 계획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현민의 의견을 반영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사는 계획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미야기현(宮城縣) 다문화공생사회추진심의회 의 의견을 듣는 것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지사는 계획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계획을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6. 현과 시정촌의 협동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하급 지자체인 시정촌과의 협동, 그리고 민간 지원을 통해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한 것이다.

현은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에 관하여 시정촌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역에 있어서의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에 시정촌과 협동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시정촌이 실시하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8조).

7.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첫째, 현민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현은 현민이 행하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제9조).

둘째, 문화적 관점에서 현민의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었다. 현민은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있어서의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제10조).

셋째, 추진체제의 정비를 규정하였다. 현은,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정촌, 사업자, 현민,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하

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한다(제11조).

넷째,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현은,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상황을 파악함과 함께,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계하는 시책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제12조).

다섯째, 상담 및 고충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현은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상담 및 고충의 적절한 처리에 노력한다(제13조).

8. 다문화공생추진심의회

(1) 다문화공생추진심의회의 설치 및 임무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미야기현(宮城縣) 다문화공생사회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 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회는 중요 사항에 관해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제14조).

(2) 심의회의 조직 및 임기

심의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조직한다. 위원은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사는 위원구성에 있어서 국적, 민족 등의 다양성의 확보에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흠결(결위)한 경우에는 보결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재임될 수가 있다(제15조).

(3)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에 따라 정한다. 회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궐위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16조).

(4) 심의회의 회의

심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될 수가 없다. 심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하는 것에 의한다(제17조).

(5) 부회(部會)

심의회는 그 정하는 것에 따라 특정의 사항을 조사연구시키기 위하여 부회를 둘 수 있다. 부회에 속할 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전2조의 규정은 부회에 준용한다(제18조).

(6) 기타

-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같다(제19조).

- 제14조부터 전조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심의회에 자문하여야 정한다(제20조).

- 지사는 매년도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을 회의에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제21조).

9. 재정상의 조치 등

현은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하였다(제22조).

10. 부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3조).

IV. 평가 및 시사점

미야기현(宮城縣)의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多文化共生社會の形成の推進にする條例)」는 대체적으로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하면서도 과거 외국인 정책을 토대로 상당한 수준에서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10월 31일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고,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상당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조례는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본의 사례를 평가하고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

(1) 첫째, 우리나라와 용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외국인, 재한외국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사회에서의 정책 대상과 기본적인 개념은 ‘재한외국인’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와 입법도 있었는데(예: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는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여성의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문화공생’을 주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냐는 입장을 더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이란 일본에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본에서도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막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단계이기 때문이거나, 아직 정책의 중심이 가족에 국한되어 있어 오히려 가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문화와 오히려 상반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정책대상을 외국인, 귀화자 등으로 분명히 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이주민의 개념 정의가 없다. 단

순히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가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주민을 포괄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조례상에서는 등록이주민과 비등록이주민의 구별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셋째, 우리나라의 표준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있으나 주민의 책무는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지만,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주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주민들 역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 부과가 아닌 한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4) 넷째, 우리나라의 표준조례안의 경우 주요 정책에 있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 체육 행사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의 경우 자세한 정책 규정보다 정보의 제공, 문화적 관점에서의 현민의 교육, 추진체제의 정비, 조사연구, 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의 대강의 방향만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현실

에 있어서는 장식적 규정에 그치고 아직 동화 중심의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의 현민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정책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5) 다섯째, 일본의 조례는 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다문화의 성격을 반영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국적, 민족 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배려 규정을 두었다. 우리나라 표준조례의 경우 일정 인원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역임하도록 하였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위원구성에 있어서 국적, 민족 등의 다양성의 확보에 배려하도록 하였고, 심의회의 회장도 호선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가 훨씬 더 다문화사회에 적합하고 외국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구조일 것임은 분명하다.